관세청 공고 제2021 - 199호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12.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요소 (수용액 포함)	기타 요소	3102.10-9000	2022.06.30.
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 화수소	천연가스(액화한 것)	2711.11-0000	2022.04.30.
	천연가스(가스 상태인 것)	2711.21-0000	2022.04.30.

끝.